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提案한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3244호 서울특별시세조례증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과세기간(법인의 경우 사업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에 적용하고,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 세율은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生活環境委員會 委員長 提案)

(16時 2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禹元植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委員 生活環境委員會 所屬 禹元植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本議員이 우리 委員會에서 發議한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提出하여 1995년 12월 26일 서울市議會의 議決을 거쳐 1996년 1월 15일 公

布된 서울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 第4條第3項의 내용이 그간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論議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同 條例案을 改正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改正內容은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 第4條第3項에서 資源回收施設이 설치되어 있는 地域 外의 生活廢棄物을 반입 처리하고자 할 때 關係區廳長에게만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동안 住民協議體와의 協의를 거쳐 他區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한 生活環境委員會에서의 논의된 바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民選 서울시는 열린 行政, 住民이 함께 하는 行政을 가장 중요한 市政方向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에 따라 燒却場 運營主體를 서울시 關聯 自治區 및 住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市政의 취지에 맞게 本 條例 第4條第3項을 改正하여 市長은 資源回收施設이 설치되어 있는 地域 外의 生活廢棄物을 반입하여 처리할 때에는 關係區廳長과 住民協議體와의 協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燒却場 施設運營이 될 것으로 思料되어, 本 件 改正條例案을 지난 3월 23日 第1次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議決을 거쳐 委員會案으로 發議하게 되었으니 배부해 드린 改正條例案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提案說明한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關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안년월일 : 96.3.23.

제출자 :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